

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

2015. 9. 18.

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

모 치

I. 검토배경 : 개선노력과 진단 1
Ⅱ. 행정지도 등 개선방안 5
1.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 6
2.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 7
3.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 8
4. 금리,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 8
5.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 구축 ······ 11
Ⅲ. 추진 계획 12
[첨부 1] 행정지도 운영규칙 13
[첨부 2] 금융위기 대응 시 수단 16
[첨부 3] 외국의 그림자규제 현황 17

│. 검토배경 : 개선 노력과 진단

(1)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념

□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 ➡ 행정지도

「행정지도 운영규칙」제2조(정의) ① '행정지도'라 함은 금융당국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·권고·지시·협조요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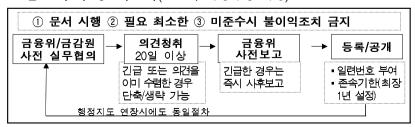
②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·규정에 대한 설명·통보, 주의환기,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가 아닌 영역 ➡ 감독행정

「행정지도 운영규칙」제2조(정의) ① '행정지도'라 함은 ···. 다만,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·주의환기·이행촉구, 인·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,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.

✓ 금융회사 입장에서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①행정지도와
 ②감독행정 등을 규제로 인식·부담(소위 그림자규제)

(2) 그간 행정지도 개선노력

- □ '14년 7월,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행정지도 개선 추진
- 행정지도 약 700건을 46건으로 일괄 감축
- 공식 등록 행정지도 외 행정지도는 무효임을 수차 공표
- ② 구두지도 금지, 금융위 사전보고 의무화, 행정 지도공문 일련 번호 부여 등 제도화('15.1.1, 개정규정 시행)



(3) 행정지도에 대한 평가

- □ 그간 **행정지도 운영절차 및 관리체계가 대폭 정비**되었으나, 금융현장에서는 아직 **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**
- 1 금융권 종사자·전문가 대상 외부 설문기관 서베이('15.7.2.)에서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이 21.8%에 불과

매우 그렇지않다	그렇지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그렇다	계
8.3	26	43.8	13.5	8.3	100%

- ② '15년 상반기 금감원 공문 전수조사 결과, 일부 공문의 경우 행정지도적 성격이 있으나 **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**
- ◇ 금감원이 '15년 상반기에 발송한 공문 35,120건 중 감독 필요에 따라 발송한 <u>공문(유의사항, 협조요청 등)은 185건</u>이며, 이 중 약 10여 건에 대해 금융회사는 규제로 인식

(<mark>주요사례</mark>) <u>"은행 임직원 대출제도 개선 협조요청" 공문('15.1.9.)</u> : 임직원 **우대금리 대출 폐지 요청**은 규제이나 **단순 공문으로 발송**

- ③「행정지도 운영규칙」상 "금융위·금감원 사전협의 → 금융위 사전보고 → 금융위 사후 종합보고"의 3단계로 규정
- 행정지도 절차를 지키기 보다는 **구두지도나 감독행정으로 실시** 하려는 경향이 있고, 경우에 따라 **즉시성 있는 대응이 곤란**
- ◆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제·개정, 폐지,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★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는 상황
- 또한 **금융회사**도 행정지도의 **체계적 관리** 및 **지점까지 전파**가 부족한 실정

(4) 문제원인 진단

□ 행정지도 등 미준수에 대한 제재 등 불이익 우려

- 행정지도 등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없으나, **다른 법규상 포괄적** 조항(예 : 내부통제 등)을 근거로 제재할 가능성
- 또한 **폐지한 행정지도**도 책임부담을 염려하여 관련 내용을 **내부규정에 존치**하여 준수
- ② 감독당국의 선제적·적극적 감독행위를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등 "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극" 존재
- **입법기술상 한**계로 인해 모든 감독기준을 법규에 담을 수 없어 집행과정에서 **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제시가 불가피**
- * 포괄적 법규(내부통제기준, 리스크 관리, 소비자보호 원칙 등)에 대해 감독 필요에 따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문 등으로 지도
- 이러한 감독행위를 실제 금융회사는 사전 건건이 개입하는 행정지도로 체감
- * 협회의 자율규제 제·개정시 사실상 구속적 의견을 제시하는 관행

③ 과거 금리, 수수료 등 시장영역에 대한 관여

- o 금리, 수수료 등 가격지표나 배당, 인사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고유 경영사항도 법규상 근거없이 관여하였던 사례
- ④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화 및 상시평가 미흡
- 감독당국이 확정된 "행정지도 개선방안"을 제대로 지키도록 내부 교육 또는 제도화(Institutionalization) 하는 부분이 미흡
- 금융회사의 체감도 등 행정지도 제도개선 및 정착 등에 대한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이 부제

참고 1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사례

□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

(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)

○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, 기존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**투자권유할 때마다** 평가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

<관련 법령 : 자본시장법 제46조>

제46조(적합성 원칙 등)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<u>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</u> <u>비추어</u>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관련 유의사항 통보

(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행사 사례)

 위기상황 분석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,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

<관련 법령 : 보험업감독규정 제3-3조 별표5>

제3-3조(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)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<u>보험회사의</u> 내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별표 5

3. <u>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</u> <u>위험을 인식·측정·감시·통제하는 체제를 구축·운영하는데 있어</u>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

Ⅱ. 행정지도 등 개선방안

- 〈 기 본 방 향 〉 -

금융권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

과제 1 :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

- 행정지도 제재불가 원칙을 감독행정까지 확대 → 사각지대 해소
- ②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현장의 제재여부 불확실성 일괄 해소
- ❸ 검사 이후 경영유의·개선사항에 대한 제재불가 규정화

과제 2 : 감독행정 내부등제 강화

- 감독행정 조치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
- ② 공문 전결 직위를 상향 조정(팀장 → 국장급 이상)
- ❸ 감독행정에 대한 금감원 내부 자체점검체계 구축

과제 3: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

- **1** 문서결재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지도 여부 상시점검
- ② 행정지도 금융위 사전보고 절차 폐지 및 사후 시정명령 근거 마련
- ❸ 행정지도 성격에 따라 존속기한 차등화(최대 3년)

과제 4 : 금리,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

과제 5 :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 구축

-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제정
- ❷ 행정지도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및 소통 강화
- **❸** 외부 전문가 상시 실태평가·개선 시스템 마련

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제정으로 제도화

1.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

- □ 행정지도 제재불가 원칙을 감독행정까지 확대→사각지대 해소
- "행정지도, 감독행정 미준수 만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"는 원칙을 「금융규제 운영규정^{*}」에 반영
- * 금융위·금감원이 규제·감독 과정에서 준수할 내부규범으로 12월 제정
- '검사결과 제재업무 체크리스트'에 '**행정지도 등을 제재근거로** 적용했는지 여부' 항목을 추가하고, 제재심에서 중점 점검
- 2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현장의 제재여부 불확실성 일괄 해소
- o 현재 금융회사들이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 당국에 "개별적으로"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
- 9월중 금융회사 전체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효력·제재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검서를 취합하여 역내 일괄하여 회신
- * 금융회사 내규, 자율규제 등에 숨어 있는 행정지도는 정비하고,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규화 추진
- 협회도 자율규제 형식의 규제를 일괄하여 재정비 방안 마련

③ 검사 이후 경영유의·개선사항에 대한 제재불가 규정화

- 검사 후 조치요구사항^{*} 중 **경영유의·개선사항은 권고사항**이지만 규정(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§15②)상 **미이행을 이유로 제재 가능**
- * ① <u>경영유의사항</u>, ②지적사항(문책·조치의뢰·주의·변상사항, <u>개선사항</u>)
- <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」제15조제2항 >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→ 경영유의·개선사항 미이행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개정

2.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

- □ 선제적·적극적 감독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이를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금융회사 간의 간극 해소 필요
- **감독기준을 모두 법규화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**로 인해 포괄적 법규의 적용기준에 대한 **감독당국의 전문적 판단**을 인정할 필요
- 반면 금융회사는 당국의 판단을 비공식 지도로 인식하는 문제
- □ 감독당국의 조치 **필요성은 인정**되어야 하나, 정제되지 않은 구두 지도, 지침의 양산 등 **과도한 재량 행사는 감독원 스스로 통제**
- ① 지도행위는 **반드시 공문으로 시행**
- ② 공문 전결 직위를 상향 조정 : 팀장 → 국장급 이상
- ❸ 금감원 내부 자체점검체계 마련
- ① **매년 1회 공문 점검**(내용 적정성, 행정지도 여부 등)
 - →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* 보고
 - * 위원장 : 금감원 수석부원장
- (i) 매년 내부통제 점검시 부서장 책임으로 이중 점검→ 감사실 통보
- ☆ 감독공문을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→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
- ⑩ 매년 1분기 공문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→ 금융위원회는 점검결과에 대해 필요시 금감원에 시정명령
- ※ '16년 1분기 최초 점검시 금융위·금감원이 공동 이행실태 점검
- ◆ 지속적 내부교육 등 변화관리를 통해 인식, 행태 변화 유도
- * 주기적 교육, 행정지도 운영제도 가이드 책자 발간·배포

3.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

- ① **대외 공문 시행전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점검**이 가능하도록 문서결재시스템 개선*(금감원)
 - * [참고 3] 금감원 문서결재시스템 개선(안)
- ② 행정지도 금융위 사전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, 사후보고 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
- ③ 행정지도의 성격에 따라 **존속기한 차등화**(1년 → 최대 3년)
- **법률 보충적 성격**의 행정지도는 해당법률의 제·개정이 없는 한 **상당기간 준수가 필요**하나 현재 연장절차를 매년 시행

4. 금리,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

	금리, 수수료	. 등 가격(이나 배당,	인사 등	고유	경영행위 에	대현
i	행정지도 금	지 원칙을	[금융규/	세 운영규	정亅이	반영 (12월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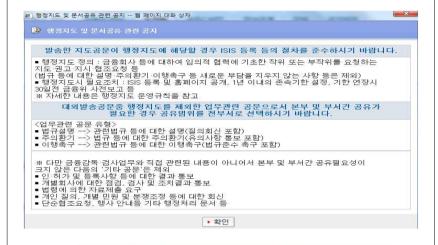
- ※ 「은행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방안」('15.8.15. 발표) 中 관련 내용 발췌
- □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·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자율성을 갖고 결정· 유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
- ① 금융회사가 가격변수를 결정·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(예: 카드 수수료 등)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
-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,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
- ② 금융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편 목적만으로 금리·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체계하에서 조정
- ③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리·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
- □ 배당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관련 법적절차(주주총회 등)를 통해 결정하며,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- 바젤Ⅲ등 국제기준,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)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자본 유지 필요
- □ 그 동안 상기 원칙에 위배되는 **그림자 규제나 관행**은 **모두 무효**임을 대외 공표(금융회사에도 개별통보하며, 관련질의시 즉시 회신)

참고 2 행정지도 절차 합리화 및 감독행정 통제절차 신설

	분	행정지도		감독행정			
_	ᄑ			현행	개선		
개	념		등의 임의적 초한 작위 위 요청 등	▪ 관련 법령 설명·주의환기·이행촉구 등			
	견 취	• 행정지도 서 온라인 공지 의견청취 의	기, 공청회 등	■미실시(기존 법령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량 판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것 이므로 생략)			
금	금 융위 - 행정지도 시행 시 금 유위 금감원 협의			■ 금감원은 시행 전 금융위에 통지 시행공문 발송시 금융위에도 발송			
내	사 전	종전 금융위 사전보고	개선 폐지 ¹⁾		▪금감원 자체통제절차에 따라 시행 - 내부 결재 국장급 이상		
부 보고 	사 후	매년 1분기 행정지도 관리현황 금융위 사후보고	시정명령권 추가	없음	■ 매년 행정지도 사전심사위 검토 ■ 내부통제, 내부감사 시 중점 점검 ■ 매년 1분기 행정지도 관리 현황 금융위 사후 보고 및 필요 시 시정명령		
시	행	■ 문서로 실시 - 행정지도 취지·내용, 존속기간 - 등록 일련번호 - 행정지도를 하는 자 신분			■ 행정지도와 동일		
_	- 전산등록·대외 공개 - 비공개 사유 -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- 금융회사 영업비밀 - 금융시장 교란, 불공정 거래 행위 유발 등			■ 행정지도와 동일			
	반시 재	■ 제재 불가		● 단순히 당해 감독행정 지도 위반만으로는 제재불가			

¹⁾ 금감원 행정지도는 금감원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

□ (현재) 대외공문 발송 시, Pop-up을 통해 행정지도 절차이행 관련 주의사항 공지



- □ (개선안)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구분하여 공문결재를 진행하도록 시스템 개선
- ① 행정지도 해당여부를 법무실과 사전협의
- ② 대외공문 발송시 '행정지도, 감독행정, 기타공문' 중 택일
- ③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경우 별도 결재절차를 준수

(행정지도): 존속기간, 일련번호를 전산입력 후 결재절차 진행

(※ 존속기간, 일련번호가 공문에 자동인쇄)

(감독행정): 근거법규, 일련번호 등 입력 후 결재절차 진행

(※ 근거법규, 일련번호가 공문에 자동인쇄)

⇒ 결재과정에서 **법무실**이 감독행정의 **적정성을 점검**

5.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 구축

□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

- 금융법령 전문지식, 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고려,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
- 금융당국* 또는 협회 신고센터에서 부당한 행정지도·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접수
- * 금융규제민원포털(better.fsc.go.kr)에 신고창구 개설
- 옴부즈만이 신고내용 **검토 및 개선권고** → **금융위·금감원**은 각각 개선방안 검토 및 **이행결과 보고**(매년 금융위 보고)
-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는 매년 12월 금융권에 배포
-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 및 동 규정 위반 시 엄정 조치

② 행정지도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및 소통 강화

- 준법감시인 업무범위에 행정지도 등 전담 관리 추가
- * 「준법감시인 모범규준」(9월 제정 예정)에 반영
- **반기별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**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**쌍방향 소통채널 마련·유지**

③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시 실태평가·개선 시스템 마련

- 행정지도 등에 대한 **금융회사 체감도 조사*** 및 **제도개선 이행**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(평가보고서 공개)
- * 금융당국·금융회사 실무자들 간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FGI(Focus Group Interview) 등 다양한 조사방법 활용
-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감독행정 내부절차 준수여부 집중 점검

□Ⅴ. 추진 계획

- ☐ **금융회사 대상** 금번 제도개선방안 **설명회** 등 **적극적 전달**
- □ 금년 10월부터 시행
- 12월 「**금융규제 운영규정」제정** 등 제도정비 완료
- □ 특히, '16년 1분기에 이행실태를 점검·보완하여 시스템으로 정착

과제명	조치사항	소관	완료 시기			
	む 감독행정 미준수 만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는 원칙 명문화 →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반영	금융위 금융정책과	12월중			
	② 비조치의견서 회신 등					
1.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	i. 전수조사 및 일괄회신	협회 현장점검단	12월 중			
	ii. 협회 자율규제 정비	협회	IZ별중			
	❸ 경영유의·개선사항 제재불가 규정화					
	-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」 제15조제2항 개정	금융위 금 용 제도팀	12월중			
2.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	- 공문시행, 전결직위 상향조정, 자체점검 등	금감원 감 독총괄국	12월중			
	① 대외공문 사전점검을 위한 문서결재시스템 개선	금감원 감 독총 괄국	12월중			
3.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	❷ 존속기한 연장 →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반영	금융위 금 융 정책과	12월중			
	중 금융위 사전보고 폐지 및 시정명령권 신설→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반영	금융위 금융정책과	12월중			
4. 금리,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	-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반영	금융위 금융정책과	12월 중			
	● 옴부즈만 제도 신설→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반영	금 융 위 금 융 정책과	12월 중			
5. 상시 점검·개선 시스템 구축	❷ 준법감시인 정기 간담회	금감원 감 독총 괄국	9월 중			
	❸ 외부전문가 중심 점검	금융위 금감원	'16년			

첨부 1 행정지도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규칙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,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·증권선물위원회·금융 감독원장(이하 '금융당국'이라 한다)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지도의 원칙,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운영규칙에서 '행정지도'라 함은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·권고·지시·협조요청 등을 말한다. 다만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·주의환기·이행촉구, 인·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지우지 않는 사항,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.② 이 운영규칙에서 '금융회사등'이라 함은 금융회사, 금융 유관기관, 금융소비자, 기타 이해관계인을 말한다.

제3조(행정지도의 원칙) ① 행정지도는 금융업관련법 등 관계 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금융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 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조(행정지도의 방식)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- 1. 행정지도의 취지·내용 및 존속기간
- 2.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
- 3.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

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 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청취 및 의견제출) ① 행정지도를 실시·변경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,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,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- 1. 긴급한 경우
- 2.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수렴한 경우
- 3.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
- ②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,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사전협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) 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 부서장이 행정지도를 실시·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(또는 증권선물위원회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실시·변경 사유 및 내용
- 2. 관련 법령
- 3.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
- 4.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
- 5. 금융당국 가 상호협의 결과
- 6.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
- 7. 존속기간
- 8.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 한 경우 반영 계획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,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긴급한 경우 : 지체없이 보고
- 2.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: 반기별 보고

제7조(등록 및 공개) ① 행정지도의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·변경·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(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7일 이내에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.

- ②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 부서장은 당해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감독, 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2.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당해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공개할 경우 금융시장의 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
- 4. 공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
- 5. 국가안전보장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7.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
- 제8조(존속기간 및 사후관리) ① 행정지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 을 설정하고, 이를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,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, 문서에 의한 행정지도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(또는 증권 선물위원회)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연장기간
- 2. 연장 필요 사유
- ④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.
- ⑥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 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,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첨부 2 금융위기 대응 시 수단

□ 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」제14조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기급조치 권한을 규정

제14조(긴급조치)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, 천재지변 또는 <u>중대한 금융 경제상의</u>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- ②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, 막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차단 등을 위한 행정지도, 권고(Moral Suasion) 등은 금번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발동 가능(선진국에서도 정책수단으로 인정)
- 「행정지도 운영규칙」상 **긴급한 경우 내부절차**(의견수렴 등)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

제5조(의견청취 및 의견제출) ① 행정지도를 실시·변경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,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,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1. 긴급한 경우

<참고: 금융시스템 위기 및 금융사고 발생 시 대응사례>

- ('03년 카드사태) 카드사태에 따른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LG카드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만기연장 및 추가자금지원 합의 유도
- ('08년 금융위기)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 및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부-은행 간 외화지급보증에 따른 양해각서(MOU) 체결
- * 외화자산 매각,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, 은행장·임원 연봉삭감 등
- ('11년 저축은행 사태)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저축은행 PF채권 캠코 구조조정기금 매각 및 자구노력 유도
- ('14년 카드사 정보유출) 불법정보 유통여부 점검 및 텔레마케팅 한시적 금지 행정지도

첨부 3 외국의 그림자규제 현황

- □ 미국, 영국의 경우 금융회사의 **자발적 협조**에 기초한 **도덕적** 권고*(moral suasion) 등을 폭넓게 사용
- * 예 : 경기부진시 중소기업 지원 요청,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 표명 및 리스크관리 강화 요청 등
- ※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평판위험을 부담
- □ 또한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각종 지도 시행
- < 사례 1 : 미국 연방준비은행(FRB) >
- o Informal & Formal Enforcement actions
 - 법규 위배나 불건전한 관행 등에 대한 시정조치
- Supervision & Regulation letters(SR letters)
 - 법규를 명확히 설명하고 잠재 리스크 제어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
- < 사례 2 : 영국 금융감독기관(FCA, PRA) >
- **O Codes of Practice**
 -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(FCA Handbook, PRA Rulebook)을 제시
 - 실질적으로 민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 규제영향평가 실시
- < 사례 3 : 일본 금융청 >
- 감독지침(guideline)
 - 현재 17개로 금융기관별로 제정되며, 조문형식으로 규정
- ※ 선진 외국사례 그림자규제 연구용역(9월∼)
 - → 필요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에 반영 예정